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708-01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안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 례

---

### 제1장 안전 부문 현황

- |    |                                       |
|----|---------------------------------------|
| 1.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안전 부문 정책목표 달성을도 ..... 1 |
| 2. | 안전부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 현황 ..... 3        |

### 제2장 안전 부문 정책별 평가 결과

- |    |                             |
|----|-----------------------------|
| 1.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5 |
| 2. |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 22 |
| 3.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46       |

### 제3장 안전 부문 개선 방향 및 과제

- |    |                                 |
|----|---------------------------------|
| 1. |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 ..... 57           |
| 2.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60             |
| 3. | 신규 정책 아젠다 ..... 62              |
| 4.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언 ..... 63 |

### 부록

- |      |                            |
|------|----------------------------|
| 1.   | 안전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 67 |
| 참고문헌 | ..... 69                   |

## 표 차례

---

### 제1장

<표 1-1>	제3차 기본계획의 안전 부문 평가지표 .....	2
<표 1-2>	농어촌 서비스기준 안전부문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	2
<표 1-3>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3

### 제2장

<표 2-1>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소요 예산 .....	15
<표 2-2>	자연재해 정책군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	18
<표 2-3>	농어업인안전보험 예산 및 결산 .....	33
<표 2-4>	어업인안전보험 예산 및 결산 .....	34
<표 2-5>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사업 예산 및 결산 .....	35
<표 2-6>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 및 실적 .....	37
<표 2-7>	어업재해보험 사업 예산 및 실적 .....	37
<표 2-8>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예산 및 결산 .....	39
<표 2-9>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	40
<표 2-10>	어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	40
<표 2-1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	41
<표 2-12>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 연도별 성과 목표 달성도 .....	43
<표 2-13>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 연도별 성과 목표 달성도 .....	43
<표 2-14>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	45

## 그림 차례

---

### 제2장

- <그림 2-1> 폭염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 사례(이종설 외 2014) ..... 21
- <그림 2-2> 한파로 인한 농어촌 피해 사례(이종설 외 2015) ..... 21
- <그림 2-3> 일반인 대비 농업인의 유병률 차이 ..... 23

### 제3장

- <그림 3-1>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 계측기술 ..... 59



## 제 1 장

---

### 안전 부문 현황

#### 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안전 부문 정책목표 달성도

- 안전부문은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 1-1>과 같이 총 8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매년 정책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음.
  - 수리시설 보수·보강,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농업용 기계 사고 발생건수, 1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 농어촌 안전 만족도
- 8개 평가지표 대부분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019년까지 63%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2019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6년 관련 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보장 범위와 수준이 확대됨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농어업인이 부담을 느껴 가입률이 감소함.

〈표 1-1〉 제3차 기본계획의 안전 부문 평가지표

7대 부문	평가지표	성과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안전	수리시설 보수·보강(누계, %)	47	51	55	57	62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누계, %)	56	57	58.1	59.8	66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57.9	59.0	55.5	54.3	63.0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40	43	22,121	22,911	22,660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수(명)					
	마을별 방범용 CCTV설치(%)	30	35.8	43.2	49.3	50
	농업용 기계 사고 발생 건수	1,100	1,130	1,083	911	900
	1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명)	0.6	0.35	0.33	0.33	0.5
	농어촌 안전 만족도(10점 척도)	6.53	6.61	6.57	6.5	-

- 국가 최소기준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의 목표치는 안전 부문 3개 항목이 모두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 경찰 순찰 항목의 경우 수치를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소방출동의 경우 목표치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범설비는 2016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2019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확신하기는 어려움.

〈표 1-2〉 농어촌 서비스기준 안전부문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6	2017	16~17 증감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43.2	49.3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5.2	24.6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 2. 안전부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 현황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안전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6.5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높음.
  - 2017년 농촌 주민 1,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안전부문이 6.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정주생활기반(6.2), 보건·복지(5.8), 교육(5.8), 환경·경관(5.8), 경제활동·일자리(5.2)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남.
-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안전부문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다소 증가함
  - 안전 부문 만족도: 도시 지역 '16년 6.9-> '17년 7.0, 농어촌 지역 '16년 6.6-> '17년 6.5

〈표 1-3〉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안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6	2017	2016	2017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8	6.8	6.7	6.6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6	6.6	6.4	6.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3	7.2	7.0	6.7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7.1	7.2	6.4	6.6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6.6	7.2	5.9	6.1
전체	6.9	7.0	6.6	6.5



## 제2장

---

### 안전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 1.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1.1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 개요

###### 1.1.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전 지구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변화 현상이 빈번히 발생
  - '17년 전 지구 평균기온(1~11월)은 20세기 평균기온( $14^{\circ}\text{C}$ )보다  $0.84^{\circ}\text{C}$  높아 1880년 관측 이래 '16, '15년에 이어 3위 차지(기상청 2017)
- 엘리뇨와 라니냐로 대별되는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연 재해 유발
  - '17년 한해 전 지구적 재해 사례 : (1월) 미국, 뉴질랜드, 유럽 한파 및 폭설, (3월) 콜럼비아 폭우, (7월) 유럽 폭염, (8월) 일본 태풍, 인도 홍수, (9월)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등

-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난유형 및 양상의 복합·다양화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막대
  - 최근 10년('08~'17)간 자연재해로 인해 연평균 15.2명 사망, 3,486억원 재산피해 발생(행정안전부 2018)
- 특히, 국지성 호우 및 태풍의 규모 증가, 잦은 지진 발생 등 대형 재난재난 위험 상존
  - 우면산 산사태('11), 울산 침수('16), 경주('16) 및 포항('17) 지진 등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 지속적 발생
- 농어촌의 경우 태풍, 홍수,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방재 인프라 부족으로 피해발생 가중
  - '17년 자연재해 유발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 어망·어구, 축사·잠사 등 농어촌 사유시설의 피해액은 총 20 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7% 차지
- 따라서,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소하천 정비 등 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산불방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특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수리시설 보수·보강율과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과 같은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농어촌 지역의 재난·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코자 함.

\* 수리시설 보수·보강율(%) : '14(47) → '15(51) → '16(55) → '17(57)

\*\*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 : '14(56) → '15(57) → '16(58.1)  
→ '17(59.8)

### 1.1.2 주요 사업 내용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의 사업목표는 크게 자연재해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산불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발생된 재난·재해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8개 주제에 대한 세부과제를 수행함.

- (7-1-1-1) 수리시설 안전관리(농림축산식품부)
- (7-1-1-2) 소하천 정비(행정안전부)
- (7-1-1-3) 어항시설 보강(해양수산부)
- (7-1-1-4)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농림축산식품부)
- (7-1-2-1)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산림청)
- (7-1-2-2) 산불예방·방지대책(산림청)
- (7-1-2-3) 산림보호 지원<sup>1</sup>(산림청)
- (7-1-2-4)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산림청)

○ 『수리시설 안전관리』는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후·파손되거나 홍수 배제능력 부족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보수·보강
- 사업기간/총사업비 : '68~'30 / 149,323억 원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17년에는 저수지 등 수원공 개보수(3,800억 원), 평야부 용배수로 개보수(1,280억 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확대하였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제공하였음.

---

<sup>1</sup> 제3차 기본계획과 '15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산림재해 모니터링”이었으나, '16년도 시행계획부터 “산림보호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내용상 차이점은 없음.

**[우수 사례] 수리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

- (1) 재해예방 예산 집중을 통해 '17년 저수지 붕괴사고 미발생
- (2) '17 준공지구 수해자 만족도 높음(86.4점)
- (3) '17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저수지 103개소에 대한 긴급조치 추진

- '18년에는 저수지 등 수원공 개보수에 3,412억 원, 평야부 용배수로 개보수에 1,188억 원을 투자예정
- 본 사업을 통해 대형 저수지 및 양·배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진단과 노후 시설물을 적시에 보수·보강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의 기능보전에 기여

○ 『소하천 정비』는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친수형 소하천 정비 및 어항시설을 보강하여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10년간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피해의 40% 가량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정비 상태로 방치된 소하천은 재해유발 요인으로 작용
- 사업기간/사업규모 : '95~계속 / 54,377 km
-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8조, 제1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 6조
- '17년에는 4,23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지방하천 정비율 (74.6%)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
- '18년에는 소하천 총 473개소에 4,221억 원을 투입, 정비추진 예정
- 본 사업을 통해 소하천 피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에 기여

**[우수 사례] 소하천 정비 우수사례 : 경기 남양주시 호만천 / 전남 나주시 은사천**

- (1) (남양주) 지자체와 개발사업자간 매칭펀드로 조성, 치수 안전성, 생태 환경성, 친수·경관성이 우수
- (2) (나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구간별 하도특성을 고려하여 획일화 방지

- 『어항시설 보강』는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노후 어항시설물의 안전화보와 어선의 안전한 피항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기후변화로 증가한 태풍, 해일 등에 견딜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확충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기간/총사업비 : 계속 / 981,500백만 원
  -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23조
  - '17년에는 가거도항 등 6개항 태풍 피해복구 공사에 401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수용대상 어선 6만 5천척 중 5만 5천척을 어항 내 안전하게 수용
    - \* 가거도항(202억), 연도항(39억), 외포항(27억), 대포항(68억), 양포항(20억), 축산항(45억)
  - '18년에는 가거도항 등 7개항 태풍 피해복구 공사에 506억 원을 투자
    - \* 가거도항(300억), 외연도항(5억), 외포항(33억), 대포항(57억), 양포항(61억), 축산항(40억), 시산항(10억)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은 배수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 재배작물 다양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여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확대하고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
  - 사업기간/총사업비 : '75~계속 / 118,491백만 원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17년에는 140지구, 22,166 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23지구를 준공하여 5,100 ha 규모의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
  - '18년에는 153지구, 20,605 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30지구를 준공하여 4,900 ha 규모의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 예정
  - 본 사업을 통해 배수개선사업 완료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증대 기여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는 지상과 차이가 큰 산악기상의 관측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 \* 지상과 비교시 풍속은 3배, 최대 강수량은 2배 차이를 보임.
-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산사태 및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실시간 산림재해 감시체계를 강화
- 사업기간/총사업비 : '12~계속 / 54,158백만 원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5
- '17년에는 국립공원 및 특수지역(DMZ) 산악기상 관측망을 구축하였으며 산악기상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한바 있음.
- 특히,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하였음.
- \* 산악기상정보시스템(<http://mteeather.nifos.go.kr>), 산림과학지식서비스 ([know.nifos.go.kr](http://know.nifos.go.kr)), 100대 명산, 산림휴양림 등 실시간 산악날씨 및 예보정보 제공

**【우수 사례】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우수사례**

- (1) 산악기상정보 범부처 공동 활용체계 및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2) 산악기상정보 융합 산림재해 예측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용화
- (3) 성과제고를 위한 언론홍보(홍보, 산업재산권, 민원지표, 논문발표 등)

- '18년에는 전국에 50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을 신규로 구축하여 신개념 산림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산악기상정보의 범부처 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융합을 통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

○『산불예방·방지대책』는 선제적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불 상황관제 일원화, 진화기반 확충을 통해 산불 초동대응 강화
  - \* 산불신고, 상황전파, 진화과정을 통합
  - \*\* 전국 산불현장 30분 내 초동진화 실현을 위한 헬기 격납고 신설
- 산불방지, 재해취약지 관리 등 산림보호에 주민참여 확대
  - \* 민간모니터링 요원 확충, 불법소각 근절문화 확산
- 사업기간 : '98~계속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장 제28~4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 '17년에는 산불소화시설,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방지대책과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집행을 전액 소화(99.8%)
- 또한, 산불 전문조사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국내외 산불·조사 감식기관에서 산불조사·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 본 사업을 통해 산불 위험이 높은 건조특보 발령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건당 피해면적 감축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실현

**[우수 사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 (1) 내용 : 불법소각 근절 및 농·산촌 산불예방 자발적 참여문화 정착
- (2) 서약참여 및 이행 : 20,410개 마을이 자발적 서약참여(97.3%)
- (3) 효과 :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을 근절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주민 자발적 소각근절문화 정착

○ 『산림보호 지원』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산림보호지원단 운영).

-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 사업기간 : '07~계속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17조
- '17년에는 128명의 인력을 고용,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 산림 정화활동 등 산림보호 활동 수행

- \* 산림피해 단속실적('17) : 3,732건
- '18년에는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림보호 지원단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용을 통한 사업성과와 내실화를 기할 예정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산사태 등 재해 우려지역에 위험 및 대피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와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함.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5~7
  - '17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3,500개소의 실태조사를 5차에 걸쳐 수행하여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연락·대피체계를 구축
  - 또한, 산사태 재난을 가정한 실제 모의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사태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음.
    - \* 취약지정 지정 및 관리, 관련 시스템 활용 등
  - '17년 성과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현장중심의 국민 체감형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 예방업무를 수행하였음.

**[우수 사례] “산사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 산사태 취약지역 21,532개소, 임도시설 1,923개소, 산지전용지 459개소, 산림복지시설 189개소, 청사·관사 등 206개소, 산불·헬기 118개소 안전점검

- '18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를 현장 컨설팅 수준으로 유지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을 위한 판정표를 개정할 계획임.
-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의 안전 대진단을 통한 현장점검·정비 등 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에 맞는 사전 대피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1.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 정책목표의 합리성

- 본 정책군의 목표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본 정책군의 목표는 제3차 기본계획에 도입된 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 목표-수단간 연계성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본 정책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가지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음.
- 다만,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크게 풍수해와 산불·산림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보여 그 외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인 상태임. 특히, 최근 농어촌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파, 폭염, 가뭄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과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수리시설 안전관리

- 본 과제는 농어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특히, 노후한 기존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 소하천 정비

- 현행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방하천의 경우 오랜 관리기간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반영되고 있으나, 소하천의 경우 지자체 관리에 따른 미관리 하천이 많아 풍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과제는 농어촌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임.

○ 어항시설 보강

- 본 과제는 태풍 내습시 어선의 안전한 피항과 방파제, 소파블록, 내항 시설 등 어항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 제시된 과제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은 어촌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됨.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 본 과제는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취지와 부합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 본 과제는 그 추진에 있어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차라리 구축된 산악기상 관측망으로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시가 필요함.

○ 산불예방·방지대책

- 본 과제는 선제적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산림보호 지원

- 본 과제의 주 목적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임.
- 민간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에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의를 두어야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취지와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 본 과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산사태 등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 및 대피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3차 기본계획의 취지와 부합하나,
- 산사태 위험지를 예방하는 것과 산사태 위험정보를 농어촌 지역에 전파하는 것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는지 모호함.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후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후자(정보전파)에 중심을 둔다면 결국 시스템의 고도화를 외부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느냐에 성과를 집중해야 할 것임.

### 1.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의 투·융자계획 등 집행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소요 예산

연번	과제명	소관부처	2015	2016	2017	2018 <sup>1)</sup>	합 계	'17 집행율 (%)
			투자액(백만원) <sup>2)</sup>					
7-1-1-1	수리시설 안전관리	농식품부	872,500	507,330	504,300	460,000	2,344,130	100
7-1-1-2	소하천 정비	행안부	523,869	422,314	422,114	512,800	1,881,097	100
7-1-1-3	어항시설 보강	해수부	44,700	50,900	40,011	50,607	186,218	100
7-1-1-4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농식품부	316,000	292,831	291,500	277,800	1,178,131	100
7-1-2-1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산림청	1,500	1,500	2,000	2,000	7,000	100
7-1-2-2	산불예방·방지대책	산림청	121,424	118,551	121,535	148,648	510,158	95.1
7-1-2-3	산림보호 지원	산림청	5,079	4,221	2,136	2,588	14,024	93.1
7-1-2-4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산림청	3,107	1,962	1,872	2,086	9,027	83.6
합 계			1,888,179	1,399,609	1,385,468	1,456,529	6,129,785	

주 1) 계획. 2) 국비(농특, 지특, 일반, 기타회계) 및 지방비 총합금액. 자료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 본 정책군에 속하는 8개 세부과제는 크게 산림청(4), 농식품부(2), 행안부(1), 해수부(1) 순이며 '15년부터 '18년까지 예산총액은 6,129,785 백만원으로 집계됨.

- 그중 농식품부 소관 과제예산은 총 3,522,261 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 차지
  - 행정안전부 소관 과제예산은 총 1,881,097 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 차지
  - 산림청 소관 과제예산은 총 533,909 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 차지
  - 해수부 소관 과제예산은 총 186,218 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 차지
- 본 정책군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세부과제는 농식품부 소관 수리시설 안전관리 과제임.
- '18년도 예산 중 '17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과제는 모두 농식품부 소관 세부과제임(수리시설 안전관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 '17년 예산이 100 % 집행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산 확보율의 감소는 본 과제의 성과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향후 본 정책군에서 제외 등).
- 본 정책군에 속하는 8개 세부과제중 3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100% 집행하였음.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불예방·방지대책”, “산림보호 지원” 과제는 90% 이상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동일부처 소관의 “산사태 취약지정 관리 강화” 과제는 83%에 그치고 있음.
  - 미집행 과제의 경우 미집행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과제추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1.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수리시설 안전관리 : 수리시설 개보수율(%)
  - 소하천 정비 : 소하천 정비확대(%)
  - 어항시설 보강 : 어선 안전 수용율(%)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 배수개선 완료지역의 침수피해 해소율(%)
  -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 주요 산악지역 산악기상관측소 설치 개소
  - 산불예방·방지대책 : 건조일수당 산불 피해면적(ha)
  - 산림보호 지원 :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창출(명)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 실태조사 달성을(%)
- 본 정책군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와 실적 달성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세부과제의 성과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
  - 농식품부 소관과제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과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불예방·방지대책” 과제는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도출
  - 반면, 농식품부 소관과제인 “수리시설 안전관리”와 행정안전부 소관과제인 “소하천 정비” 과제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완전달성에는 미도달
    - \* 두 과제 모두 ’15, ’16년에는 초과달성하였으나, ’17년에는 미달
  - 안전 부문 소속 타 정책군과 비교시 본 정책군의 목표달성을이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표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표들 구성되었는지 추후 검토가 필요함.

〈표 2-2〉 자연재해 정책군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성과목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적			
			'15	'16	'17	'18(목표)
수리시설 개보수율(%)	1 (정량)	목표	50	53	58	60
		실적	51	55	57	-
		달성도	102	103	98	-
측정산식	(완료/대상)×100					
소하천 정비확대(%)	1 (정량)	목표	43.5	44	45.6	45.7
		실적	44.2	44.9	45.4	-
		달성도	102	102	99.6	-
측정산식	{(전년도까지 + 당해연도) 소하천 정비 연장}/전국 소하천 총연장×100					
어선 안전 수용율(%)	1 (정량)	목표	82.1	83.1	83.8	84.5
		실적	82.6	83.2	83.9	-
		달성도	101	100	100	-
측정산식	{(전년도까지 + 당해연도) 소하천 정비 연장}/전국 소하천 총연장×100					
배수개선 완료지역의 침수피해 해소율(%)	1 (정량)	목표	99	99	99	99
		실적	100	100	100	-
		달성도	101	101	101	-
측정산식	(최근 5년간 준공지구 총 침수피해면적-침수피해면적)/최근 5년간 준공지구 총 침수피해면적					
주요 산악지역 산악기상관측소 설치 개소	1 (정량)	목표	30	30	50	50
		실적	30	30	50	-
		달성도	100	100	100	-
측정산식	년간 산악기상관측소 설치 개소수					
건조일수당 산불 피해면적(ha)	1 (정량)	목표	3.5	3.2	3.5	4.7
		실적	4.5	3.5	9.4	-
		달성도	129	109	269	-
측정산식	년간 산악기상관측소 설치 개소수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창출(명)	1 (정량)	목표	369	250	128	128
		실적	369	250	128	-
		달성도	100	100	100	-
측정산식	고용인력수					
실태조사 달성을(%)	1 (정량)	목표	3,500	5,000	3,500	4,000
		실적	3,500	5,000	3,500	-
		달성도	100	100	100	-
측정산식	실태조사 실적/실태조사 계획×100					

- 각각의 세부과제의 정책적 목표와 그 실현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간의 갭(gap)이 있어 정량적 지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 반대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였다면 정량적 지표는 달성한 것임.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과제의 경우 구축된 산악기상 관측망이 직접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므로 삶의 질과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재설정하여야 해야 함.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림보호 지원” 과제의 경우 산림보호를 감시할 인원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지원 인력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과제의 경우 실태조사 달성을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환기시켜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 지역을 어떻게 보수·보강했는지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선정해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1.3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제언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 세부과제의 다양화
  - 본 정책군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년에 새로이 도입된 정책군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산불방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다만, 제3차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가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적인(classical) 자연재해인 풍수해와 산불,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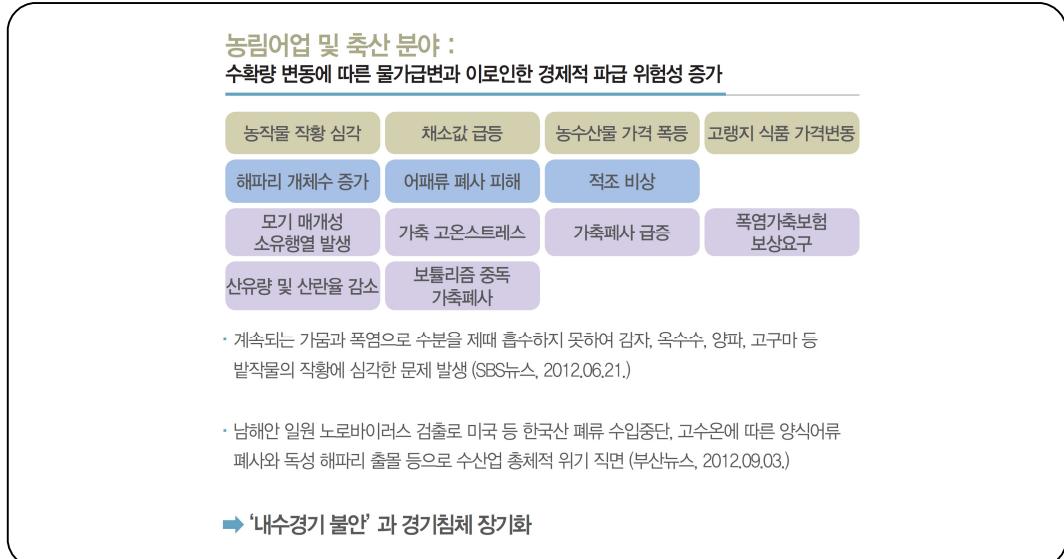
산사태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음.

- 기후변화는 기존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한파, 폭염, 가뭄 등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신종 재난들을 발생시켜 농어촌 지역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신종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농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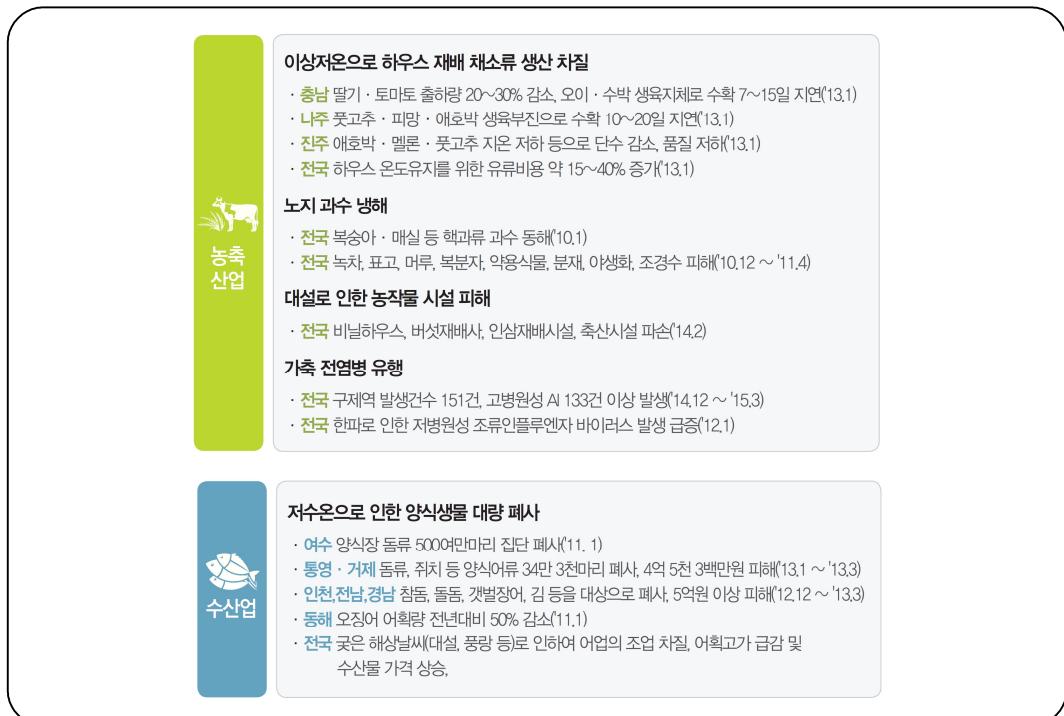
#### ○ 세부과제 성과지표의 현실화

- 세부과제의 정책적 목표와 그 실현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지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 소관과제에서 목표-지표간 갭(gap)이 상당수 존재
- 정책수혜자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 주민 만족도가 반영된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향후 만족도 조사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폭염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 사례(이종설 외 2014)



〈그림 2-2〉 한파로 인한 농어촌 피해 사례(이종설 외 2015)



## 2.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 2.1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 개요

#### 2.1.1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업인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및 질병 위험에 노출됨.
  - 농작업이나 어작업은 동일한 작업이 장시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체에 무리를 초래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직업성 질병으로 악화되기도 함.
  - 또한 농작업이나 어작업의 편리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기계나 선박 등의 사용이 확대·보편화되면서 농어업인은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음.
    - 최근 들어 농어업 작업의 고령화·여성화가 점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의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284건으로 농번기인 5~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67.3%),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4.4%로 고령자의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한국농정신문 2018.10.14.).
  - 농어작업 과정에서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농어가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함.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평균 재해율('13~'16)은 0.5~0.6%인데 비해 농산업 근로자의 평균 재해율은 0.9~1.3%로 나타남 (이경숙 2018).
    - 같은 기간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율은 4.5%, 농기계 사고율은 7~8% 내외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17).
  - 농업인은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표1), 근육골격계통 질환 및 순환기 계통 질병의 경우 농업인이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흡기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의 유별률도 농업인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됨(이경숙 2018).

〈그림 2-3〉 일반인 대비 농업인의 유병률 차이

Table 10. 일반인 대비 농업인의 유병률 차이 (전체)

구분	농업인 전체 유병률 (A)				일반인구 전체 유병률 (B)				일반인구 대비 농업인 유병률			
	12'	13'	14'	15'	12'	13'	14'	15'	12'	13'	14'	15'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23.7	24	22.9	22.9	23.5	24.1	23.5	23.6	+	-	-	-
신생물 (C00-D48)	10.6	10.7	10.7	10.7	9	9.3	9.4	9.6	+	+	+	+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D50-D89)	2.8	2.9	3.1	3.2	2.8	2.9	3	3		+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9)	27.9	28.8	29.6	30.4	27.3	28.6	29.8	31	+	+	-	-
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15.7	16.1	16.2	16.6	12.7	12.7	12.8	13.1	+	+	+	+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19	18.8	18.7	18.8	14.1	14.1	14.2	14.5	+	+	+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31.2	31.3	31	31	30.6	30.9	31.4	31.7	+	+	-	-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H60-H95)	14.5	14.6	14.1	14.2	12.8	12.9	12.6	12.7	+	+	+	+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46.8	47.1	47.1	47.1	35.4	36.2	36.6	37.3	+++	+++	+++	++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65.6	62.3	62.3	60.2	60.5	58.7	60.2	58.2	++	+	+	+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68.8	67.3	65.5	64.2	62.3	61.6	61.2	60.9	++	++	+	+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L00-L99)	36.1	36.5	35.7	34.9	32	32.7	32.4	31.6	+	+	+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64.8	63.5	62.1	60.8	51.7	51.7	52.1	52.2	+++	+++	+++	++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19.9	20.3	20.5	20.7	23	23	22.6	22.7	-	-	-	-

주: 오른쪽간의 부호(+)는 일반인(A)과 농업인(B)의 유병률 차이(A-B)를 나타내는 것으로 + = (A-B) < 5%, ++ = 5% < (A-B) < 10%, +++ = 10% < (A-B)를 의미함

자료: 이경숙(2018)

- 일반 근로자는 산업 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고 있으나, 농어업인은 자영업자라는 특성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움.
  - 농어업인의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공제)가 농어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보장 수준은 산재보험에 크게 못 미침.
  -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은 산재보험 수준에 걸맞는 농업인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농업인(단체)들의 요구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제화가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제정되고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산재보험으로서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보장 내용이나 수준은 여전히 산업재해보험에 미치지 못해 보장수준의 계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그나마 마련된 농어업인 안전 관련 보험들에 대한 농어업인의 가입률이 저조함.
    - 2016년 농촌진흥청이 1만 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율은 9.8%, 농작업근로자보험의 가입율은 1.6%에 불과함(이경숙 2018).
- 농어업은 산업적 특성상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기상 여건의 호·불호에 따라 농수산물 생산량은 크게 달라지며, 농어업소득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빈발로 태풍, 호우, 가뭄, 폭염, 이상저온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수산물 생산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부 농어업인만 혜택을 보고 있음.
    -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수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려면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은 장기간 농어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농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나 직업성 질병은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임과 아울러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 농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및 질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와 질병을 파악하고 이들을 예방하는 방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인 직업성 질병에 대한 조사 자료를 축적·분석하여 직업성 질병을 규명·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재해예방 관련 정책(사업)들을 장기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 결과들은 축적되어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관련 정책(사업)들은 단발성 시범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1.2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 사업은 10개임.
  - 10개의 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농어업인의 농어작업 활동 과정에서의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 ②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및 ③농어업인의 농어작업(업무)상 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업
  - 분야별 사업은 다음과 같음.
    - (1) 농어업인 재해안전 관련 제도(보험) 정착
      - 7-2-1-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7-2-1-2 농업인업무상재해보장제도 지원
      - 7-2-1-3 수산인 안전공제(어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 7-2-1-4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 (2)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7-2-2-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7-2-2-2 어업재해보험
- (3)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7-2-3-1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장조사
  - 7-2-3-2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7-2-3-3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 7-2-3-4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한도) 및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의 보험료 50% 지원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국고 40%, 지자체 4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87<sup>2</sup>세
  - 농기계종합보험: 12개 농기계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업인 소유 도로주행 농기계

#### ○ 농업인업무상재해보장제도 지원<sup>3</sup>

- 목적: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지원내용: 관련 연구비 지원

<sup>2</sup> 2016년까지는 가입 연령 상한이 84세였음.

<sup>3</sup> 2016시행계획에서는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기존 과제명: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제도 지원)’으로 과제명을 표시.

- 지원대상: 공공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sup>4</sup>
- 목적: 수산작업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내용: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 및 특약(장제비 지원·재해장해연금)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50% 지원
  -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배우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당연 및 임의 가입자 제외
-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 목적: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 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목적: 농가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
  - 지원내용: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농작물·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규모: 농작물 46품목, 가축 16축종
  - 지원조건: 국고보조 50%(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100%, 가축 50%)

---

<sup>4</sup> 2017년도부터 사업명이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으로 변경(사업 전환에 따른)

○ 어업재해보험

- 목적: 자연재해 등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험 원리를 이용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 지원내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지원
- 지원대상: 양식어업인 등 보험가입자, 수협중앙회(보험사업자)
- 사업규모: 21개 품목, 13천 어가
- 지원조건: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 100%

○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장조사

- 목적: 어업인의 어작업에 따른 건강위해요소를 측정 및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 시 지원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 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귀어·귀촌 인구 유인
- 지원(조사)대상: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 사업규모(사업량): 1식
- 지원(조사)대상: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목적: 농업인의 업무상재해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지원
- 지원내용: 관련 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 공공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 사업규모: 1 소과제 4 세부과제
- 지원조건: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sup>5</sup>

- 목적

---

<sup>5</sup> 2018시행계획부터 과제명 변경(⇒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지원)(2018시행계획)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 지원내용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안전보건 문제 진단·개선방안 컨설팅, 마을별 작업 개선, 농작업 안전 교육, 건강관리 등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 실천(교육, 안전보조구, 안전장비, 안전기록 등)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해당 지역에 적합한 컨설팅을 통한 편이장비 선정, 개선·개발 및 보급 등
- 지원대상: 농업인(마을 및 작목반 등 단체)
- 사업규모(사업량): 245개소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2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60, 농작업환경개선 160
- 지원조건: 국비, 지방비 각 50%

○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 목적: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관련 연구비 및 정보화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공공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 사업규모(사업량): 3 소과제 3 세부과제
- 지원조건: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 2.2 심층평가 범위

-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의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심층평가도 분야별로 실시함.
  - 분야별로 사업이 농업분야와 어업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성격은 유사함.
  -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 업무상 재해 예방 분야로 나누어 평가함.

## 2.3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 추진 실태 평가

### 2.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농어업인재해보험
  - 농어업인이 농어작업 중 안전사고나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어업인안전재해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사업은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다만,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제도 지원’ 사업은 관련법령에 위임 받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분야에 포함되기보다는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 분야로 분류되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업인 업무상재해 보장제도 지원’(가칭)과 같은 어업인 관련 사업도 추진되어야 하나 어업인 분야 사업은 추진되지 않음.

- 수혜대상 농어업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보험료(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업인재해보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므로 농어업인(및 어선)의 보험 가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 다만,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만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험의 가입률도 별도의 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실적 추세치를 고려하여 무난하게 설정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업재해보험

-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전(補墳)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농어업재해보험 실시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 농어업인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목표는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에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보험가입률을 설정한 것은 적절함.
  - 가입률 산정 기준은 농작물(면적), 가축(두수) 및 양식수산물(어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성과목표치를 전체 가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큰 품목의 가입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
  - 가입률 저조 품목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농어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4가지이며 각각의 사업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
  - 이들을 종합하면 농어업인의 업무상 재해 규모와 원인 및 위해요소 등 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료를 축적(DB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하는 한편, 편이장비 개발·보급 및 농어업인의 안전 의식 및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어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목표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양하고 광범위함.
  - 어업분야 사업은 하나이므로 사업 간 중복 문제가 없으나 농업분야의 3개의 사업은 사업 목적이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업 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각각의 사업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과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사업의 경우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목적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을 보면 사업이행건수, 조사농가수, 결과활용건수, 농작업효율개선율, 농작업안전관리수준 향상율, 산업체산권 건수, 정보화 접속건수, 안정장비 개발 건수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추측되나, 일부 지표들의 경우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얼마나 적극적인 목표 설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2.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 농어업인재해보험

- 농어업인의 농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및 예산 확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표 2-3〉 농어업인안전보험 예산 및 결산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계
	계획/ 실적	농특회계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기타회계			
2015	계획	48,951 <sup>1)</sup> 58,141 <sup>2)</sup>				1,200 1,800	600	50,751 59,941
	결산	50,499 <sup>2)4)</sup> 56,941 <sup>3)</sup>				1,800 1,200		52,299 58,141
2016	계획	64,014 <sup>2)</sup> 62,814 <sup>3)</sup>				1,800 1,200		65,814 64,014
	결산	51,257 <sup>3)</sup> 52,457 <sup>4)</sup>				1,200 1,800		52,457 54,257
2017	계획	58,095 <sup>3)</sup> 59,295 <sup>4)</sup>				1,200 1,800		59,295 61,095
	결산	57,385 <sup>4)</sup>				1,800		59,185
2018	계획	59,525 <sup>4)</sup>				1,800		61,325
	실적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 무엇보다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농어업인안전 관련 보험사업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이 2015년 1월 6일 제정·공포되고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농어업인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은 제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농어업인안전보험 관련 사업들의 예산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산 확보와 집행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인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시도가 지속되어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은 바람직함.
  -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보장수준(예: 사망 시 유족급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재보험 수준으로 향상시키려 하였고, 고령·영세농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보험이 되도록 상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한 것은 바람직함.

〈표 2-4〉 어업인안전보험 예산 및 결산

	계획/ 실적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회계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기타회계			
2015	계획	1,509 <sup>1)2)</sup>						1,509
	결산	1,384 <sup>2)</sup> 1,367 <sup>3)</sup> 1,509 <sup>4)</sup>						1,384 1,367 1,509
2016	계획	1,609 <sup>2)3)</sup>						1,609
	결산	1,451 <sup>3)</sup> 1,866 <sup>4)</sup>						1,451 1,866
2017	계획	1,732 <sup>3)</sup> 1,832 <sup>4)</sup>						1,732 1,832
	결산	1,784 <sup>4)</sup>						1,784
2018	계획	1,809 <sup>4)</sup>						1,809
	실적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표 2-5〉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사업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 원

	계획/ 실적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회계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기타회계			
2015	계획	94,016 <sup>1)</sup>						94,016
	결산	94,016 <sup>2)</sup> 117,272 <sup>4)</sup>						94,016 117,272
2016	계획	112,650 <sup>2)</sup>						112,650
	결산	112,650 <sup>3)</sup>						112,650
2017	계획	105,663 <sup>3)</sup>						105,663
	결산	105,663 <sup>4)</sup>						105,663
2018	계획	113,260 <sup>4)</sup>						113,260
	실적							

주1: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주2: 2014년 세수 부족으로 예산 77,523백만 원 중 54,267백만 원 집행, 23,256백만 원 이월되어 2015년 2월 집행  
완료

- 어업인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도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 상품(고액형, 프리미엄형)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보장수준(예: 사망공제금)도 확대하고, 당연가입 대상(어선원보험)을 계속 확대하였으며,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자체와 수협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 것은 바람직함.
- 다만,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시행에 따라 보장범위가 확대 또는 신설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률이 저조해진 것은 아쉬운 점이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업재해보험

- 생산 과정에서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해보험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예산의 적절한 확보 및 집행,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많은 농어가에게 경영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업재해보험은 대다수 농가를 보장대상으로 하기 위해 보험대상 작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가입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속적으로 상품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매년 보험대상 품목을 늘려 2018년 현재 보험대상 품목은 57개임.
  - 자기부담비율 완화, 할인·할증 개선, 무사고환급제(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제도 개선은 바람직함. 특히 무사고 환급제는 예산당국의 반대로 1년 시행 후 중단되었으나 이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적절함.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와 유형도 확대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가축재해보험도 소의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화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수확량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수입보험도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 수입보험품목 추가: '15: 콩·포도·양파 ⇒ '16: 마늘 ⇒ '17 감자·고구마
- 어업재해보험도 보다 많은 어업인을 보장 대상으로 하기 위해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함.
  - 보험대상 품목은 2014년 18개이던 것이 2018년에는 27개로 확대됨
  -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면서 전국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함.
  - 조수(潮水)나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 및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함.

〈표 2-6〉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 및 실적

단위: 백만 원

	계획/ 실적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회계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기타회계			
2015	계획	285,349 <sup>1)</sup>						285,349
	결산	270,454 <sup>2)</sup> 253,973 <sup>4)</sup>						270,454 253,973
2016	계획	286,885 <sup>2)</sup> 304,551 <sup>3)</sup>						286,885 304,551
	결산	301,251 <sup>3)</sup> 281,864 <sup>4)</sup>						301,251 281,864
2017	계획	286,995 <sup>3)</sup>						286,995
	결산	288,109 <sup>4)</sup>						288,109
2018	계획	252,148 <sup>4)</sup>						252,148
	실적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표 2-7〉 어업재해보험 사업 예산 및 실적

단위: 백만 원

	계획/ 실적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회계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기타회계			
2015	계획	19,174 <sup>1)</sup>						19,174
	결산	19,174 <sup>2)</sup>						19,174
2016	계획	22,200 <sup>2)</sup>						22,200
	결산	22,200 <sup>3)</sup>						22,200
2017	계획	26,812 <sup>3)</sup>						26,812
	결산	29,561 <sup>4)</sup>						29,561
2018	계획	32,800 <sup>4)</sup>						32,800
	실적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 ○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이 분야의 세부과제는 4개이며, ‘농어업 작업과 관련한 다양한 안전기술 확산과 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 적임(기본계획 85p).

- 4개의 연구과제는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통계화함으로써 장차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병을 규명·정립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연구과제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간에 유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포지엄이나 연구회 개최 및 학회 참석 등이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결과가 연구의 최종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임.
  - 연구과제는 해당 년도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연구결과가 계속 축적되어 일정 시점이 되면 농어부병의 규명·정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자료가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통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부터 조사결과의 집계·정리·해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성과 아울러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임.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제와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사업은 작업별 편이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기술이전하는 사업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편이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방비는 절반 정도 감소하고 지특회계는 80% 이상 감소하였음(표7 참조).
  - 예산 감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다음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2-8〉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 원

	계획/ 실적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회계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기타회계			
2015	계획	2,125 2,165 <sup>2)</sup>	3,994			6,119		12,238 12,278 <sup>2)</sup>
	결산	2,165	3,994			6,119		12,278
2016	계획	2,165 <sup>2)</sup>	4,100 <sup>2)</sup>			6,225 <sup>2)</sup>		12,490
	결산	2,165 <sup>3)</sup>	4,100 <sup>3)</sup>			6,225 <sup>3)</sup>		12,490
2017	계획	2,125 <sup>3)</sup>	3,444 <sup>3)</sup>			5,569 <sup>3)</sup>		11,138
	결산	2,125 <sup>4)</sup>	3,444 <sup>4)</sup>			5,569 <sup>4)</sup>		11,138
2018	계획	2,125 <sup>4)</sup>	465 <sup>4)</sup>			2,590 <sup>4)</sup>		5,180
	실적							

주1: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주2: 농어촌구조개선큰별회계(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 2.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 농어업인재해보험

- 농어업인이 농어작업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재해)로 인명이나 재산이 손상을 입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농어가 경영에 치명적인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농어업인안전보험임.
- 농업인안전보험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어업인이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써 ‘가입률’이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관련 사업들은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어업인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설정임.
-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 보장수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

을 강구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어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가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가 2016년부터는 어업인 가입자수를 성과지표로 변경하였음. 가입률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것으로 사료되나, 어업인수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입자 수가 성과지표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는 우산(보장) 아래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2-9〉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기준치 (성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1 (정량)	목표	59.0 <sup>1)</sup>	60.0 <sup>1)</sup>	61.0 <sup>1)</sup> (60.5) <sup>3)</sup>	62.0 <sup>1)</sup> (58.0) <sup>4)</sup>	63.0 <sup>1)</sup>
		실적	56.4 <sup>2)</sup>	55.5 <sup>3)</sup>	54.3 <sup>4)</sup>		
		달성도	95.6 <sup>2)</sup>	92.5 <sup>3)</sup>	89.8 <sup>4)</sup>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표 2-10〉 어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기준치 (성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어업인안전보험 어업인 가입률(%) ⇒어업인안전보험 어업인 가입자수 (명) <sup>3)</sup>	1 (정량)	목표	43 <sup>1)</sup>	45 <sup>1)</sup> 41 <sup>2)</sup> 26,146명 <sup>3)</sup>	46 <sup>1)</sup> 23,855명 <sup>3)</sup>	48 <sup>1)</sup> 21,375 <sup>4)</sup>	50 <sup>1)</sup>
		실적	43	22,121명 <sup>3)</sup>	22,911 <sup>4)</sup>		
		달성도 (%)	100	84.6	96.0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표 2-1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	9.9 <sup>1)</sup>	12.9 <sup>1)2)</sup> 8.0 <sup>3)</sup>	13.6 <sup>1)</sup> 9.3 <sup>3)</sup>	14.2 <sup>1)</sup> 6.5 <sup>4)</sup>	14.9 <sup>1)</sup>
		실적	11.2	9.0 <sup>3)</sup>	10.0 <sup>4)</sup>		
		달성도(%)	113.1	112.5	107.5		
②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	18.1 <sup>1)</sup>	18.3 <sup>1)</sup> 19.6 <sup>2)</sup> 20.5 <sup>3)</sup>	19.4 <sup>1)</sup> 22.7 <sup>3)</sup> 21.6 <sup>4)</sup>	20.5 <sup>1)</sup> 22.0 <sup>4)</sup>	21.3 <sup>1)</sup>
		실적	18.7 <sup>2)</sup>	20.5 <sup>3)</sup>	23.5 <sup>4)</sup>		
		달성도(%)	103.3	100.0	108.8		

주: 1) 2015 시행계획, 2) 2016 시행계획, 3) 2017 시행계획, 4) 2018 시행계획

#### 〔사례〕유족급여금 1.2억 원 지급 사례

- 총보험료: 174,000원(국고지원 87,000원, 시·군·구 지원 43,500원, 농협지원 43,500원, 농가부담 0원)
- 0\*\*\*(남, 76세)는 비닐하우스에서 경운기 로터리 작업 중 쓰러져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여 후송하였으나 사망
- 농작업 중 재해 사망보험금 12,000만 원 + 추모장례지금 100만 원 = 12,100만 원

#### 〔사례〕재해장해금 4천 2백만 원 지급 사례

- 총보험료: 108,500원(국고지원 54,250원, 광역시 지원 8,140원, 시·군·구 지원 18,980원, 농가부담 17,130원)
  - 김\*\*\*(남, 75세)는 거름운반 중 기계에 발을 깔리면서 다치는 사고를 당함. 발목 이상을 일어 60% 장해상태로 인정됨
  - 농작업 중 재해장해보험금 3,300만 원 + 간병급여금(50% 이상 재해)500만 원 + 휴업급여금 212만 원 + 치료보험금 200만 원 = 4,212만 원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 〔사례〕어업작업 중 사망 어업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례

- 2017.8월 북한강 조업활동 중 사고로 사망한 어업인에 대하여 81백만 원 보험금 지급
  - 총보험료 20만 원(10만 원 국고지원)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 〔사례〕어선어업 활동 중 재해 사망 어선원 보험금 지급 사례

- 2017.5.25. 충남 태안군 근흥면 비열도 남방 약 9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어구 줄이 절단되면서 머리를 타격하여 병원 후송 중 사망하여 보험금 3억 7천만 원을 지급
  - 9.77톤(어선 5인)
  - 국가지원: 162만 원(보험료 지원?)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 ○ 농어업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농어업인의 참여가 중요함. 따라서 가입률(가입면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여 추진한 것은 적절함.
- 어업재해보험의 경우 2016년까지는 ‘대상품목 확대’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하였는데, 대상품목 확대는 매년 도입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본사업 품목(5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률 목표를 설정하던 것을 2017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가입률 목표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함.
- 농업재해보험이나 어업재해보험 모두 매년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어업재해보험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비해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과 어업(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품목 간에 편차가 심한데,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의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17년 평균 가입률은 30.1%이지만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은 70~80%대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대다수 품목은 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의 경우도 2017년 평균 가입률이 92.9%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소와 말 등 보험료 부담이 큰 축종의 가입률이 저조하며 가입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넙치, 전복 등 일부 품목은 70~80%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어종들의 가입률은 저조함.

〈표 2-12〉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기종치 (성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가입률)	0.7 (정량)	목표	150천ha <sup>1)</sup> (18.0%)	170천ha <sup>1)</sup> 24.0 <sup>2)</sup>	200천ha <sup>1)</sup> 28.0 <sup>3)</sup>	220천ha <sup>1)</sup> 30.5 <sup>4)</sup>	250천ha <sup>1)</sup>
		실적	21.8 <sup>2)</sup>	27.5 <sup>3)</sup>	30.1 <sup>4)</sup>		
		달성도 (%)	121.1	114.6	107.5		
②가축 재해보험 가입률(%)	0.3 (정량)	목표	90.0 <sup>2)</sup>	91.0 <sup>2)</sup>	92.5 <sup>3)</sup>	93.0 <sup>4)</sup>	
		실적	90.7 <sup>2)</sup>	92.4 <sup>3)</sup>	92.9 <sup>3)</sup>		
		달성도	100.8	101.5	100.4		

주: 1) 2015 시행계획, 2) 2016 시행계획, 3) 2017 시행계획, 4) 2018 시행계획

〈표 2-13〉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기종치 (성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①대상품목 확대 <sup>6)</sup>		목표	3 <sup>1)</sup>	3 <sup>1)</sup>	3 <sup>1)</sup>	-	-
		실적	3				
		달성도 (%)	100				
②보험가입 제고 (가입률 %)		목표	38.0 <sup>1)</sup>	40.2 <sup>1)</sup> 50.6 <sup>2)</sup> 55.9 <sup>3)</sup>	42.5 <sup>1)</sup> 59.2 <sup>3)</sup>	44.8 <sup>1)</sup> 40.2 <sup>4)</sup>	46.1 <sup>1)</sup>
		실적	48.3 <sup>2)</sup>	56.1 <sup>3)</sup>	60.2 <sup>4)</sup>		
		달성도	127	100.3	101.7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 〔사례〕농업재해보험금 지급 사례

- (강원 고성) 벼 80,708㎡를 경작하는 함\*\*(55세)는 보험료 340만 원 중에서 67만 원(농가부담액)을 내고 가입금액 9,080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수확감소보험금 3,050만 원을 지급 받음
  - (전남 진도) 벼 25,192㎡를 경작하는 박\*\*(57세)는 보험료 350만 원 중에서 70만 원(농가부담액)을 내고 가입금액 2,300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수확감소보험금 1,300만 원을 지급 받음
  - (경북 안동) 사과 농가 김\*\*는 보험료 3060만 원 중에서 532만 원(농가부담액)을 내고 가입금액 7,478만 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 우박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료의 6배인 3,39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음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6 2017년부터 성과지표 ‘①대상품목 확대’는 제외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16년까지 ‘보험가입 제고(가입률)’만을 성과지표로 설정

**[사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양식어가 보험금 지급 사례**

- 2017.8.4~27 발생된 고수온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서귀포시) 넘치 양식어가 피해 발생으로 보험금 3억 5천만 원 지급
    - 1,005만 원 보험료 국고지원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와 관련된 4개의 세부과제 중 3개는 연구사업이고 1개만이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성과지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설정해야 하지만 과제별 목표 달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함.
  - 4개 과제의 성과지표를 보면 이행건수(조사건수), 조사농가수, 결과활용건수, 농작업효율개선율, 농작업안전관리수준향상율, 교육매체 개발건수(산업재산권 건수), 정보화접속건수 등 다양하며, 매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들 지표들로 각각의 세부과제의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장조사’ 과제의 경우 조사사업 자체를 지표로 설정하여 조사사업만 실시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측정됨.
  - 조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위 과제와 성격이 유사한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제는 성과지표로 ‘조사농가수’와 ‘결과활용건수’를 설정하고 있어 유사한 과제 간에도 지표 설정의 차이가 큰데, 마찬가지로 이들 지표를 통해 이 과제의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려움.

〈표 2-14〉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농가수	1 <sup>7</sup> (정량)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실적	10,000 <sup>2)</sup>	10,000	10,000		
		달성도	100	100	100		
결과활용건수		목표	3	3	3, 4 <sup>3), 4<sup>4)</sup></sup>	3, 4 <sup>4)</sup>	3
		실적	4 <sup>2)</sup>	8 <sup>3)</sup>	10		
		달성도	133	267	330		

주: 1) 2015년 시행계획, 2) 2016년 시행계획, 3) 2017년 시행계획, 4) 2018년 시행계획

-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과제와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과제의 경우도 조사농가수, 결과활용건수, 농작업효율개선율, 농작업안전관리수준향상을, 교육매체 개발건수(산업재산권 건수), 정보화접속건수 등의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각각의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재해예방 기술 개발

- 농업인 업무상 손상 국가통계 생산(2017)
    - 조사대상: 전국 10,000농가의 농업인
    - 분석된 통계결과의 대 국민 서비스
      - \* 2016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 등록
      - \* 자료 벌간: 일기 쉬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 〔사례〕질병관리본부 협업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실천

- 쪽쓰가무시증, SFTS 등 예방 교육·홍보 지원
    - 시·군 센터 - 보건소 연계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2,457명)
    - 질병관리본부 업무협의(2회), 농업전문지·홈페이지 정보 제공(2회)
- ⇒ 농진청(시·군 센터) - 질병관리본부(시·군 보건소) 농업인 감염병 예방 협업 기반 마련
- 자료: 2018년 시행계획

7 2016년부터 설정

**[사례]온라인 기반의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정보 확산**

- (홈페이지)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http://farmer.rda.go.kr>
  - (체험프로그램) 인삼, 들깨/참깨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 (홍보동영상) '상지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관리하세요' 개발
- ⇒ 온라인을 통한 전국 농업인 대상의 보편적 인적피해 예방관리 정보 서비스  
자료: 2018년 시행계획

### 3.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3.1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군 개요

##### 3.1.1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지역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 함. 도시화와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도시지역의 경우 정책적 노력으로 생 활안전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 되고 있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 요한 시점
  -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은 좋은 반면 생활안전 사각지 대 문제는 오히려 불리한 여건
  -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도로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전을 심각하게 위 협하고 있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촌지역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정책적 어려움 존재함.
  - 도시지역은 인구밀집에 따른 다양한 생활안전 정책이 개발되고 시설이 구축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그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됨.

- 인구밀도가 낮아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부족하고 이는 결국 정책적 대책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주민주도의 사고예방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생활안전 통합관리체계가 구축 필요성
  - 농어촌지역의 경우 교육기회 부족 안전의식 저하 등의 이유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성이 대부분 노인층으로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 부족에 따른 안전문화 정착이 어려운 것도 정책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인구소멸지역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는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과 접근이 절실함.
- 3.1.2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군 사업은 총 7개임.
  - 지능형 CCTV 및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 위험도로 구조 개선
  - 교통안전활동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지능형 CCTV 및 통합관제센터 확대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구축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향상
  - 지자체 각 부서별로 설치한 CCTV를 통합하여 운영효율성 향상 및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
  - 18개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 지원(110억원)

- 지자체 CCTV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통합관제센터 내 인테리어, 부대장비 등 설치
- 초등학교 CCTV 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 종합상황관제시스템(재난종합상황실) 통합 또는 상호연계 구축 등
- 교통·방범·화재예방 등 다양한 목적의 CCTV를 지자체 부서별로 각각 설치·운영함에 따라 관제업무의 비효율 발생하여 통합 운영
-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 탐지대응 능력 향상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도입 마련
- CCTV 표준화 및 녹취형 CCTV 등 지능형 기술개발의 추진
- 이상음원탐지, 문제 상황 자동인식 등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 기술 도입
- 우수 지자체 사례의 공유를 통한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노하우 공유

#### ○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확산

- 생활안전에 대한 지리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친근감 있게 위험정보 전달
-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서부터 우리 마을의 안전, 직장의 안전, 지역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실천형 사업
- 지역안전지수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 비교를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및 사고 건수를 비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에 공개하는 지역안전

지수와 연계하여 교부. 그 중 3%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2%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정하여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개선 노력을 기울인 지역을 모두 배려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www.mois.kr](http://www.mois.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http://www.safemap.go.kr)) 누리집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등급 확인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안전 관련 통계들을 검색하여 안전수준 진단·분석 등에 활용

#### ○ 농어촌 지역 범죄 예방 활동

- 농어촌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전의 향상에 기여
-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진단 활성화로 범죄 취약 요소를 보완하고, 자치단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방범 인프라 구축
- 농산물 수확기 등 시기별 치안 수요를 분석한 맞춤형 순찰활동 전개
- 지역주민 대상 범죄 예방 홍보로 안전 의식 및 관심도 제고
- 전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 운영(CPO) 및 유관기관·지역주민 등 협업으로 범죄 취약 지역 진단 및 시설물 개선 활동
- 지자체·농협 등과 협업하여 취약 장소에 CCTV·경광등·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등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 범죄 예방 진단팀 중심의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지속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업으로 방범 용 CCTV·비상벨 등 지속 보급 및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범죄 예방 인프라 지속 확충
- 지자체의 CPTED 관련 조례(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등) 제정 독려
- 수확기 전·후 농산물 보관 창고 등 절도 예방 대책 적극 추진

#### ○ 농어촌 폭력 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

- 지역 폭력예방교육의 성과를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과 시상
- 우수사례는 예방교육 사례의 완성도, 타 기관과의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2016년의 경우 교육운영 우수사례로 경기북부(사)에코젠더, (사)광주여성의 전화,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가 선정
-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맞춤형 가정폭력예방을 진행하며 폭력예방에 대한 실천방안을 서로 공유함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
-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종사자, 노인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장애인, 아이돌보미 등 지역내 다양한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각 대상에 맞는 교육내용 및 강의안 구성. 특히 폭력예방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및 실천에 대한 강조 등 지역적 특성과 대상에 맞는 교육기획이 필요

#### ○ 위험도로구조개선

-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한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교통효율성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
- 2017년도에는 지방도로 상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6개 시·도 91개소 추진
- 교통사고 감소효과,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사업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방안 개선 필요
- 도로교통공단,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대상지 개선 전·후 현장사진, 사고발생 건수, 사상자수 등 통계자료 내실화 강화 필요
- 지방도로 상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

##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 사업 추진

### ○ 교통안전활동 강화

- 농어촌(군) 지역 内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보행자 사고위험을 감소하고자 함.
-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보행·교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업인 다수를 구성하는 노인층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함.
- 노인보호구역 설치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농어촌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 전국 군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실시
- 농어촌(군)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지정 신청→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여부 조사→경찰청(지방청, 경찰서)과 협의→주출입문 기준 일정거리 보호구역 지정
-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취약요소 상반기 집중점검 및 연중 정비
-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 집중·상시점검 및 정비하고, 안전시설 점검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설설치 및 관리

###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5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안전장비 보급사업 지원
-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사업자 모집공고(시·군·구) → 희망 수요자 모집(시·군·구) → 사업신청서 제출(어업인) → 장비설치 확인 교부금 지급(시·군·구) → 정산 및 결과보고(시·도)
- 어선 안전장비인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보급 지원으로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기여
- 착용이 간편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업인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구명조끼 착용율 저조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과제
- 대부분을 차지하는 5톤 미만 소형 영세 어업인에 대해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3.2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군 추진 실태 평가

#### 3.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 상향식 정책형성이 아닌 하향식 정책형성의 한계

- 농어촌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부분의 안전정책이 주민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주도형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하향식 정책형성에 의한 안전 정책은 결국 집행단계에서 큰 호응과 참여를 동반하기 어려움. 결국 정책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생활안전 사각지대야 말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참여하여 사업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정책형성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생활안전지도나 농어촌 지역범죄예방활동과 같은 사업의 경우 정책형성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
- 실제 생활안전상의 위험요소와 범죄빈번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가 정책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형

성에 참여하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능형 CCTV,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인계층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보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3.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각 부처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사업예산이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안전관련 사업예산의 집행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사업의 성과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 정책집행의 탄력성 확보

-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은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집행의 탄력성이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함.
-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집행의 타당성 확보가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업의 집행에 필요함.
- 안전관련 사업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예산집행의 필요

성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급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탄력적인 예산집행 및 운용이 필수적인 분야임.

-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3.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 단기적 성과에서 중장기적 성과로의 전환

-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대부분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음. 지능형 CCTV 구축이나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은 단기적 예산투입에 따른 물리적 유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바람직한 정책성과 평가는 단기적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사업에 따르는 중장기적 성과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생활안전지도, 농어촌 지역범죄예방 활동, 농어촌 폭력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교통안전 활동강화 등은 단기적 성과로 측정이 어려움.
- 단기적 성과 측정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의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단기적 정책성과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르는 본질적 성과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 양적 위주 평가에서 질적 위주 평가로의 전환

-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음. 숫자로 표현되는 명확함과 간결함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의 목적이라는 본질적인 질적 성과는 제대로 측정되고 평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양적평가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질적 평가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 지능형 CCTV 구축, 위험도로구조의 물리적 개선 등은 양적 평

가와 기준으로 보이겠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책집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 내용도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양적 위주 평가에서 질적 위주 평가로의 전환은 성과위주의 정부사업평가의 약점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균형은 바람직한 정책성과평가의 나가야할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 하향식 정책형성에 따르는 정책집행과 성과평가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함. 어느 정도의 양을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하는 내용을 담기에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평가가 용이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정책사업들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음.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범죄예방활동, 폭력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방이나 댐과 같은 물리적 방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안전지도, 범죄예방교육, 교통안전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 3 장

---

### 안전 부문 개선 방향 및 과제

#### 1.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

##### 1.1. 주요 성과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의 주요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수리시설 안전관리 과제의 경우 재해예방 예산 집중을 통해 '17년 저수지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17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저수지 103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추진한 바 있음. 이러한 성과는 결국 '17년도 준공지구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소하천 정비 과제의 경우 경기 남양주시 호만천과 전남 나주시 은사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호만천의 경우 지자체와 개발 사업자간 매칭펀드로 조성되었으며, 치수 안전성, 생태 환경성, 친수·경관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또한, 은사천의 경우에도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였으며 구간별 하도특성을 고려하여 획일화를 방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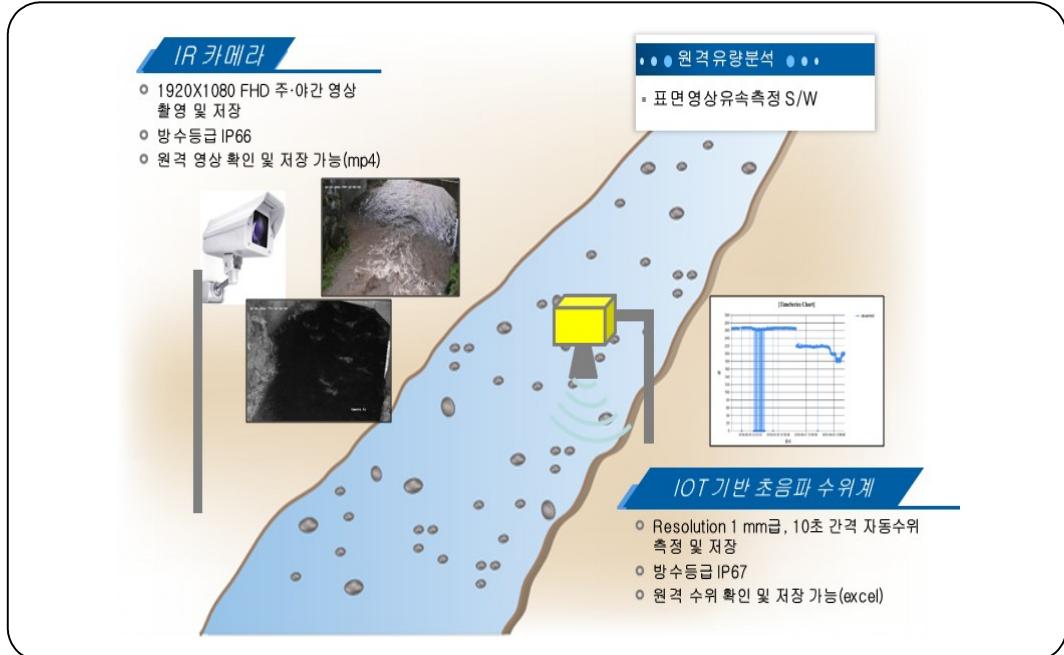
-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과제의 경우 산악기상정보의 범부처 공동 활용 체계와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측기술을 고도화하였고, 현장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산불예방·방지대책 과제의 경우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농·산촌 산불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문화의 정착을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였음.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과제에서는 산사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총 21,500여 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 1,900여개의 임도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1.2. 우수 사례 및 시사점

- 우수사례명 : 『자동유량 계측 개발 및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 시스템』
  - \* 소하천 정비과제 관련
-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홍수피해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 최근 10년간(‘07~’16년) 전체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40.3 %(3,116 억원)가 소하천에서 발생
  - 전국 22,823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매우 부족하여 기존의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장비로는 수심, 유량 등 관련 통계자료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 \*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100개소 이상 관리
  -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접촉식 계측방법은 홍수 시 깊어진 수위와 빨라진 유속 때문에 하천에 접근이 어려워 계측이 불가능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CCTV 기반 자동유량 계측기술’은 소하천 감시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표면영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표면유속, 유량 측정 및 위험수준을 경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
    - \* 영상비교를 통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고 이를 촬영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
  
- ’18년에는 유량계측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적으로 4개의 소하천에 설치하여 실측을 통한 유량 산정 방법으로 계측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향후 설치대상 소하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확대할 계획임.
  - 이와 같은 기술은 소하천의 흐름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경보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 계측기술



##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불예방·방지대책”, “산림보호 지원” 과제는 90% 이상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동일부처 소관의 “산사태 취약지정 관리강화” 과제는 83%에 그치고 있음.
  - 미집행 과제의 경우 미집행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과제추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와 실적 달성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세부과제의 성과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
  - 농식품부 소관과제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과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불예방·방지대책” 과제는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도출
  - 반면, 농식품부 소관과제인 “수리시설 안전관리”와 행정안전부 소관과제인 “소하천 정비” 과제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완전달성을 미도달
  - 안전 부문 소속 타 정책군과 비교시 본 정책군의 목표달성을이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표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표들 구성되었는지 추후 검토가 필요함.
- 농어작업 안전 관련 사업의 재조정 필요
  - ‘안전’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문으로 농어업작업 안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타 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업 분류와 사업내용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의 통·폐합, 내용 조정, 신규 과제 설정 등

- 현재 보건·복지 부문에 속해 있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도 농어업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포함하여 전면적인 사업 재분류가 필요함.

#### ○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부문 재분류

- 현재 안전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과 어업재해보험 사업은 사업부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안전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한 것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상 농어업인이 업무상 활동에서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즉, 농어업인의 신체상 상해나 질병 및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안전에 대한 것들임.
-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의 신체나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농축산물과 양식수산물 및 관련시설 및 장비, 즉 물적 재산에 대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3. 신규 정책 아젠다

#### ○ 다양한 세부과제 발굴

- 본 정책군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산불방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다만, 제3차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가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적인(classical) 자연재해인 풍수해와 산불, 그리고 산사태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음.
- 기후변화는 기존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한파, 폭염, 가뭄 등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신종 재난들을 발생시켜 농어촌 지역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신종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농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세부과제 성과지표의 현실화

- 세부과제의 정책적 목표와 그 실현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지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언

- 농어업 작업(업무) 특성에 따른 안전재해에 초점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의 ‘안전’분야는 농어업인의 작업상 특성으로 인한 인적 재해(신체,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 농어업인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보험이 실시되고 있음.
  - 각각의 보험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산재보험 수준에는 미흡한 면이 있으나 농어업인 안전 관련 정책(사업)이 실시 타당성 및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 농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보험 등 타 정책들도 비교 검토하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계획 하에 접근
  - 농어업인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동 법 제16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앞으로 농어업인의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련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 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사고 및 재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5년마다)에 따라 사업(과제)을 발굴·설정하고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농어작업 안전 관련 사업의 재조정

- ‘안전’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문으로 농어업작업 안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타 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업 분류와 사업내용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의 통·폐합, 내용 조정, 신규 과제 설정 등
- 현재 보건·복지 부문에 속해 있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도 농어업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포함하여 전면적인 사업 재분류가 필요함.

#### ○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부문 재분류

- 현재 안전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과 어업재해보험 사업은 사업부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안전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한 것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 상 농어업인이 업무상 활동에서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즉, 농어업인의 신체상 상해나 질병 및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안전에 대한 것들임.
-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의 신체나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은 없으며, 농축산물과 양식수산물 및 관련시설 및 장비, 즉 물적 재산에 대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조사·연구 결과의 정책(사업)화

- 농어업인 업무상 재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은 조사·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재해 예방 관련 사업들도 시범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장기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업인 직업성 질병 규명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추진

- 농업인 질병의 상당부분이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거나 하우스나 축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기도 하며, 수시로 각종 농기계를 다루는 등 농업 특성상 불가피한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누구나 농어업인의 질병이 농어업이라는 직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데 수긍(심증)은 하나 물증이 없기 때문임.
-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병을 규명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 록

---

### □ 안전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 여부	내용 개선	평가 사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수리시설 안전관리	②	③	-
	소하천 정비사업	①	②	·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사업 추가 필요
	여행시설 보강	②	③	-
	배수개선 사업	②	③	-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②	②	·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산불예방·방지대책	②	②	· 소득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됨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③	①	· 고용창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②	②	· 산사태 위험을 직접 예방하는 방법과 산사태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방향전환 필요
<b>&lt;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gt; 한파, 폭염, 가뭄 등 신종재난 대책</b>				
재해에 안전한 영농 활동 기반 조성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②	②	·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 보장수준 확대
	농업인업무상재해보장제도 지원	③	①	· 사업 목적 명확화, · 타 사업과 연계·통합, 재정비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②	②	·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②	②	·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②	②	·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어업재해보험	②	②	·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장조사	②	②	· 전국적 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수행 5개 연구과제)	③	①	· 사업 목적 명확화, · 타 사업과 연계·통합, 재정비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③	①	· 사업목적 명확화, ·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제안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국립농업과학원 수행 4개 연구과제)	③	①	· 사업 목적 명확화, · 타 사업과 연계·통합, 재정비
<b>&lt;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gt; 없음</b>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 여부	내용 개선	평가 사유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 터 확대 구축	②	③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①	②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커뮤니티 단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농어촌 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①	②	·경찰청 범죄 예방 진단팀의 자체 예산이 없어 지자체의 관심 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 경찰의 자체 사업 추진 검토 필요
	농어촌 폭력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청소 년 성문화센터 운영)	②	③	
	위험도로 구조 개선	①	②	·사업비가 감축되는 추세로 사업 위축이 우려되며,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체감도를 높일 필요
	교통안전 활동 (노인보호구역 지정, 구역 내 교통안 전시설 정비)	①	②	·사업이 주로 노인 보호 구역 설정에 그침 ·예산 확보를 통한 실질적 여건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안전장비 3종 지원)	①	②	·안전 장비 구매에 부담이 커 사업 집행률이 낮음. 조업 안 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농촌 노인들의 자가용 운행, 대중교통 이용,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 2018. 『2017년 이상기후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농업재해보험연감」.
- 농촌진흥청. 2018.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결과보고서: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 보건복지부. 2017.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2018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안내」.
- 성주인 외.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20) 수립방향 연구」.  
C2014-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경숙. 2018.11.2. “농업인 안전재해 현황과 미래 전략”. 「농업이의 삶의 질,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농협미래경영연구소.
- 이종설. 정재학. 김도우. 신진동. 김미선. 윤경호. 황지은. 김좌현. 박상진. 이유림. 2015.  
『Future Safety Issue』.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이종설. 정재학. 김대곤. 김혜원. 원정연. 김도우. 원진영. 박재은. 박지환. 2014. 『Future  
Safety Issue』.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최경환·박대식·허주녕·고성진·송태균(2010), 『농어민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방안 검토』,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정신문. 2018.10.14. “5년간 농기계 사고 2,284건”.
- 행정안전부. 2018. 『2017 재해연보』.

